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6

제출일자 : 2026. 9. 2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의 인용 제명·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제명·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제명 변경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 조문 변경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등
- 용어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8. 20. ~ 9. 9.)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제명·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18조 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회계법」 중”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를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로 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정책연구 용역검수)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가 이행한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 용역검수)----------「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달성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제18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3. (생 략)	제11조(사업비의 환수) -------- ---------- ---------- ----------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 2. ~ 3.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9조(재정 지원) ①----------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운영계획서 1부 2. 성실이행서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 ---------- ---------- ---------- ---------- ---------- ---------- ----------. 1. ---------- 2.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 7. (생 략)	제7조(위탁신청) ①---------- ---------- ---------- ---------- ---------- ----. 1.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 7. (생 략)

관 계 법 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지방회계법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 · 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물품관리관 · 채권관리관 · 부채관리관 ·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 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

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